

제280회 강서구의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1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6월 15일
전문위원 서 선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64
- 나. 제 출 자: 송순호 의원 외 7명
- 다. 제출일자: 2021년 5월 26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2. 제정이유

강서구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스마트도시 강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현황조사, 관리지침 마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품질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사.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2021년 본예산 편성

다. 해당부서: 정보통신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5. 27. ~ 6. 1.)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는 등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 도시 강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의 802.11 무선 통신 표준 기술에 기반한 근거리 통신망으로 공공 와이파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말함.
- 주민들은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거리 이내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여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을 더욱 확장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며, 지역·계층간 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강행규정)

-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 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 불편사항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관리지침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으로

-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스설 설치·관리
-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스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품질관리, 안 제9조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관리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음.
- 강서구에서는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가계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하여 2007년부터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¹⁾의 일환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²⁾’ 시범 사업구로 선정되어 기존 관공서 위주로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를 주민 생활권역으로 폭 넓게 확대하였고,
- 2021년 현재 강서구 관내 4차선 이상 도로, 공원,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 다빈도 지역을 중심으로 1,480대가 설치되어 있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
- ※ 강서구 공공 와이파이 설치현황 별첨 참조
- 향후 공공 와이파이를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 이에 따른 정보 격차 해소, 가계 통신비 절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주요 추진방향 설정과
 - 통신망 품질관리 및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 서울시에서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 10월 발표한 계획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 전 구역에 자가통신망, 공공 와이파이, 공공 사물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사업

2)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브랜드 명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새이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인 ‘까치’와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뜻의 ‘온(on)’이 결합된 이름. Wifi6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와이파이 대비 4배 빠른 속도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능정보서비스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소수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 조례제정의 입법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됨.

참고

강서구 공공 와이파이 설치현황

□ 공공 와이파이 운영현황

○ 운영수량 : 접속장비(Access Point) 1,480대(25개 자치구 1위)

- 동별 접속장비 설치현황

항목	소계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등촌3동	화곡본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4동	화곡6동
수량(대)	1,480	78	39	46	76	80	93	39	51	68	99
		화곡8동	우장산동	가양동	가양2동	가양3동	발산동	공 항동	방화동	방화2동	방화3동
		47	87	223	50	40	64	58	130	50	62

- 구축위치별 접속장비

항목	소계	주요거리	전통시장	공원	문화관광, 체육시설	버스정류소	커뮤니티
수량(대)	1,480	593	45	264	88	123	367

※ 커뮤니티는 구청, 주민센터, 공공청사 및 기관, 고용·창업 등 일자리, 취업시설, 구민회관 등을 말함.

○ 이용현황

- 강서구 내 전체 접속장비(AP) 1,480대의 1일 데이터 유통량은 약 5,876GB로서 연간 14,499,206천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

☞ 데이터 구매단가는 1GB당 6,760원(2021. 05. 27. 보도자료)

관리 구분	접속장비 수량(대)	전체 접속장비의 1일 데이터 유통량(GB)	전체 접속장비의 1일 접속자 수(명)	전체 접속장비의 연간 데이터 유통량(GB)
강서구	404	3,847.75	33,532	1,404,429
서울시	965	1,917.56	72,322	699,90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11	111.00 (추정치)	8,319 (추정치)	40,515 (추정치)
소 계	1,480	5,876.31	114,173	2,144,853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